

문서번호	시민참여예산담당관-1191	주무관	참여운영팀장	시민참여예산담당관	재정기획관	기획조정실장
결재일자	2019.2.8.					
공개여부	대시민공개	협 조 예산담당관 민관협력담당관 지역공동체담당관				
방침번호						

I · SEOUL · U

2019년 시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



2019. 2.

기 획 조 정 실

(시민참여예산담당관)

사전 검토항목

☞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'■' 표시하시기 바랍니다. (※ 비고 :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)

구 분	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	검토 완료	해당 없음	비 고
시 민 참 여	●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? 예) 청책토론회, 설문조사, 시민공모 등	■	<input type="checkbox"/>	
전 문 가 자 문	●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? 예) 자문위원회 개최, 타당성 검토, T/F 운영 등	■	<input type="checkbox"/>	
갈 등	●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? 예)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,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	■	<input type="checkbox"/>	
사 회 적 약 배 자 려	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? 예) 아동, 장애인, 한부모 가정 등	■	<input type="checkbox"/>	
성 별 분 리 통 계	●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? 예) 인적통계 남·여 구분, 수혜집단의 남·여 구분 등	■	<input type="checkbox"/>	
일 자 리	●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? 예) 직·간접 채용, 취업알선, 전문인력양성, 창업지원 등	<input type="checkbox"/>	■	
선 거 법	●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? 예) 홍보물 배포, 표창수여, 경품지급, 기부행위 등	■	<input type="checkbox"/>	
안 전	●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? 예) 장소·시설물 점검,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	■	<input type="checkbox"/>	
타 기 관	● 타 기관 협의·협력(타 자원 활용 등)을 하였습니까? 예) 중앙부처, 타 지자체, 투자·출연기관, 민간단체 등	■	<input type="checkbox"/>	
홍 보	●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? 예) 보도자료, 기자 설명회, 현장 설명회 등	■	<input type="checkbox"/>	
정 책 영 문 화	●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? 예) 영문 제목·요약, 해외 언론 보도, 외국어 홈페이지 등	■	<input type="checkbox"/>	
바 른 우 리 말	● 불필요한 외국어·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 을 사용하였습니까? 예) 스페이스, 플랜, 앵커시설, 거버넌스, 인큐베이팅, 매칭 등	■	<input type="checkbox"/>	
결 재 문 서 공 개	● 공개 여부를 “비공개”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? 예)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~제8호	<input type="checkbox"/>	■	
지 속 가 능 성	● 정책·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? 예) 지역경제 발전, 사회적 형평성, 환경의 보전 등	■	<input type="checkbox"/>	

목 차

I. 시민참여예산제 개요	1
II. 2018 주요 운영성과 및 추진실적	2
III. 2019 추진방향	4
IV. 2019 시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	5
1 시민참여예산 사업심사 및 위원회 운영	5
2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지원	16
3 예산학교 운영	20
4 시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운영	23
5 참여예산제에 대한 시민참여 유도	24
6 시민참여예산제 추진 시 개인정보 처리	25
7 시민참여예산제 관련 시민의견 조사	26
V.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	27
[붙임 1] 사업분야 및 제안기준과 담당부서	30
[붙임 2] 시정·지역참여형 사업 신청서	31
[붙임 3] 민관예산협의회 사업 심사 평가표	32
[붙임 4] 민관예산협의회별 공무원 간사부서 현황	34
[붙임 5] 자치구 참여예산 지원신청 사업 목록	35
[붙임 6]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지표(안)	36

2019년 시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

2019년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재정 민주주의 구현이 될 수 있는 참여 예산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I 시민참여예산제 개요

운영 목적

-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의 시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·민주성을 증대하고 참여민주주의 활성화

운영 근거

- 지방재정법 제39조(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)
-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(지방예산 편성과정에서의 주민참여 절차)
-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

운영 개요

- 총 규모 : 700억원 내외
 - 시정분야 : 450억원(시정참여형 350억원, 시정협치형 100억원)
 - 지역분야 : 260억원 내외(지역참여형 20억원 내외, 구단위계획형 210억원 내외, 동단위계획형 30억원 내외)
- ※ ① 시정참여형·지역참여형·동단위계획형은 사업선정 후 예산편성까지, 시정협치형·구단위 계획형은 사업 집행, 평가까지 시민(제안자) 참여
- ② 시정협치형, 구단위·동단위계획형은 서울혁신기획관 별도 운영계획 수립 추진
- '19년 사업선정 방식 : 민관예산협의회 심사 후 투표로 선정
 - ※ 자치구 사무는 자치구에서 심사·상정하고 총회에서 최종 승인

〈 2019년 시민참여예산 사업 선정결과 : 총 730건 647.2억원〉

구 분	계	시정참여형	시정협치형	지역참여형	구단위계획형	동단위계획형
사업수(건)	730	67	35	91	176	361
(억원)	647.2	350.3	95.3	66.7	111	23.9

II

2018 주요 운영성과 및 추진실적

1 주요 운영성과

① 온라인 참여 기능 강화로 시민참여 확대

- 참여예산사업 제안과 심사단계에 시민의견 반영
 - 홈페이지에 시민 선호도 높은 사업 전면 배치, 의견제출 시민 인센티브(모바일상품권) 제공
- 참여방식 다양화, 투표기간 연장, 홍보 강화로 참여기회 확대
 - 사업선정 시민투표 시 현장투표 등 참여와 투표기간 연장(2주 ⇨ 4주)

② 사업 심사절차 강화 및 절차 보완으로 사업품질 제고

- 컨설팅단을 운영, 제안자, 사업부서 등이 참여하여 숙의심사 실시
 - 사업제안 컨설팅을 통한 시민제안서 숙성 및 품질 향상
 - ※ '18년 컨설팅 완료 90건(컨설팅 배부 사업의 81%)
- 시민 투표 전 이의 절차를 마련하여 부적격 사업 배제
 - 총회상정 사업에 대한 이의·조정 창구 마련하여 부적격한 사업 배제
 - ※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 이의 신청 안내 공지('18년, 1건 신청)

③ 자치구 참여예산제 다양성 및 자율성 향상

- 지역사회혁신계획에 기반한 구단위계획형 추진 자치구 확대(7개⇨11개)
 - 참여예산사업(4.5~5.5억원)을 구단위 지역혁신계획 통합시 추가지원(5억원)
-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에 정성평가와 우수사례 평가 지표를 도입하여 자치구별 다양성과 자유로운 제도 운영 활성화
 - 제도 운영의 양과 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다양하고 자율적인 제도 운영 유도

④ 시 전체예산 의견제시 활동 강화 및 시민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저변 확대

- 연중 온예산분과를 운영하여 전체예산 의견제시 활동 강화
- 교육을 통해 양성된 시민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저변 확대
 - 참여예산제 홍보, 교육 및 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등 활동 진행

2 추진 실적

① 2019년 시민참여예산사업 선정 : 730건 647.2억원

- **시정분야**(시정참여형, 시정협치형) : 102건 445.6억원
 - 제안사업 공모(2~3월)
 - 제안사업 시·구 사무구분, 통폐합 및 적격성 검토(3~5월)
 - 민관예산협의회 사업심사 추진(5~7월)
 - ※ 제안자 청취, 현장 확인, 숙의심사, 1차 사업 선정 등 121회 1,330명 참여
 - 시민 투표(8.6~9.1) 및 한마당 총회(9.1)
 - ※ 사업 전시 및 25개 자치구 현장 홍보, 시민 투표 120,801명 참여
- **지역분야**(지역참여형, 구단위계획형, 동단위계획형) : 628건 201.6억원
 - 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에서 심사·선정, 시 참여예산위원회 총회 승인
 - ※ 지역참여형(14개 구 91건), 구 단위(11개 구 176건), 동 단위(81개 동 361건) 사업 선정

② 시 전체 예산편성 과정의 시민참여

- 참여위원 :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온예산위원(5개 분과 72명)
- 참여내용 : 2019 서울시 전체예산(안)에 대한 시민의견서 작성
- 추진사항 : 2019 예산 편성방향 제시(3~6월) ▶ 주요사업 의견수렴(7월)
 - ▶ 시민의견서 작성·확정(8~10월) ▶ 시민의견서 시의회 제출(11월)

③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예산학교 운영

- 교육대상 : 일반시민(청년·여성·장애인·다문화 등 연계) 및 참여예산 위원
- 운영결과 : 총 46회, 3,070명 교육 참여
 - 기본교육 15회, 심화교육 9회, 찾아가는 교육 8회, 시민 네트워크 교육 14회
 - ※ '18년 기본교육 수료자(예산학교 회원) : 889명(12~18년 예산학교 회원 수 순계 2,848명)



2019 추진방향

컨설팅단 운영 내실화 및 참여사업 모니터링을 통한 품질향상 제고

- 컨설팅단 운영 및 컨설팅 완료 후 평가보고회를 통한 평가·환류 실시(신설)
-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시민 눈높이에서 시민의견 수렴 및 문제점 개선

참여예산제에 대한 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상설교육 확대·다양화

- 예산학교는 민간전문기관 대행 운영을 통한 교육 상설화(신설)
- 특정 계층별(청년 등), 관심분야별(복지 등), 청소년(신설) 교육 등 특화교육 다양화

자치구 참여예산제 발전 및 활성화 지원

- 지역사회혁신계획에 기반한 구단위계획형 추진 자치구 지원 확대(11개 → 21개)
- 자치구 평가지표 개선 및 평가범위확대(1년 → 2년)로 사업관리 강화

시민참여 예산제 관련 시민의견 조사로 제도 개선 향상 도모

- '참여예산 홈페이지'를 통해 '시민의견 조사'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
- 참여예산제 실시(사업 접수·심사·실행 등)에 대한 만족도 및 의견 제시

※ 시민숙의 예산 시범사업 계획안 : 별도 수립

IV 2019 시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

1 시민참여예산 사업심사 및 위원회 운영

1 총괄 개요

□ 심사 규모 : 700억원 내외



※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 결과에 따라 지역참여형, 구단위계획형사업 차등 지원

□ 사업 구분

구분		사업내용	사업심사주체
시정분야	시정참여형	2개 이상 자치구의 시민편익 향상과 광역도시 문제해결 사업	서울시 시민참여예산위원회
	시정협치형	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 선정·집행 등 전 과정에 민관이 공동 참여하는 사업	
지역분야	지역참여형	지역사회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 밀착형 사업	자치구 참여예산위원회
	구단위계획형	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區 지역 사회혁신계획 사업에 참여예산사업을 통합추진하고 인센티브 부여	자치구 민관협치회의
	동단위계획형	마을단위 문제해결을 위한 마을계획단 등 발굴 사업	서울시 동단위 시민참여예산심의회

※ 시정분야(시정협치형), 지역분야(구단위계획형, 동단위계획형)는 서울혁신기획관 별도 운영계획 수립 추진

2 시민참여예산(시정참여형) 사업 심사

□ 추진개요

○ 사업규모 : 350억원

- 일반사업 40억원 미만, 프로그램(행사성) 사업 3억원 미만

※ 최소사업비는 원칙적으로 1억원 이상, 사업특성에 따라 예외 인정

○ 대상사업 : 시정주요분야 시 사무로 시비투자 대상 사업

- 시정주요분야 : 여성·교육, 경제·일자리, 복지·행정, 교통, 문화관광, 환경, 도시안전, 주택, 공원

- 시정분야별 시 사무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시정우수사업 발굴

- 자치구 사업을 시정참여형 사업으로 제안할 경우 해당 자치구로 이관 심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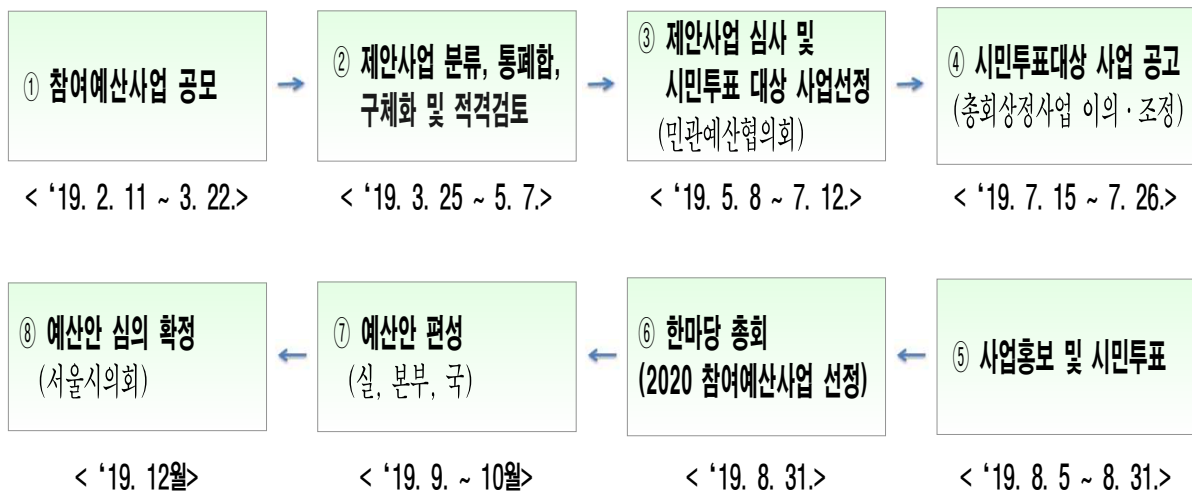
○ 추진방법

- 시민으로부터 분야별로 제안사업을 접수하여, 민관예산협의회에서 사업심사

- 민관예산협의회는 분야별 실링범위 내에서 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해 선정

- 참여예산 총회는 민관예산협의회에서 선정된 사업에 대해 참여예산위원, 예산학교 회원 및 제안자 투표, 시민투표 결과를 합산하여 2020년 시민참여예산사업을 최종 결정

□ 추진절차



□ 세부 추진계획

① 참여예산사업 신청 2019. 2. 11. ~ 3. 22. (6주)

- **신청자격** : 서울 시민과 서울 소재 직장인·학생·단체
※서울시와 자치구의 공무원 및 산하 출연기관이나 투자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
- **신청내용** : 사업명, 사업개요, 사업기간, 위치, 예산규모, 현장사진, 기대효과, 사업설명 동영상, 기타 필요한 자료 등(붙임 2)
- **신청기간** : 2019. 2. 11. ~ 3. 22.(40일간)
- **신청방법** :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(<http://yesan.seoul.go.kr>), 우편·방문접수
※ 우편 접수처 :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시민참여예산담당관(5층)
- **의견제시** : 시민참여 홈페이지에 제안사업에 대한 의견 제출(사업 심사 시까지)
 - 좋은 의견 제출 시민에게 인센티브(모바일 상품권 등) 제공

② 제안사업 분류, 통폐합, 구체화 및 적격검토 2019. 3. 25. ~ 5. 7. (7주)

- **사업분류** : 시사무(시정참여형·협치형), 자치구사무(지역참여형)
 - **시정참여형 사업**은 민관예산협의회 분야별 간사 부서에 설치하는 「민관예산협의회」 심사에 회부
※ 시정분야 : 조례 제18조의2 제1호 및 제2호
 -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
 - 사업의 기대 효과가 일반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사업
 - **시정협치형 사업**은 서울혁신기획관 에서 협치형 사업 심사기준과 절차에 따라 시행하고, 시정참여형으로 신청된 사업중 자치구 소관 사업은 실·본부·국에서 분류 후 해당 자치구로 이관

■ 통폐합, 구체화 및 적격검토

- 시 사업부서에서 유사사업 통폐합, 구체화 및 적격검토 후 민관예산협의회 검토 회부

【 부적격 사업 】 「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18조의 2 등」

- 지방자치법, 지방재정법, 그 밖의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는 사업
-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시 또는 자치구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
-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
※ 계속사업 : 공사나 제조, 그 밖의 사업으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
- 기타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
※ 학술용역 심의, 민간위탁 동의 등 법정 사전절차 미이행한 경우 제외
(단, 참여예산사업 선정 후 시의회 예산안 제출 전까지 절차 이행한 경우는 가능)

③ 민관예산협의회 사업심사 2019. 5. 8. ~ 7. 12. (10주)

■ 제안사업 적격/부적격 심사

- 시 사업부서에서 적격 및 부적격으로 분류한 사업에 대한 적정여부 심사

■ 제안자 사업설명 청취 및 현장확인

- 적격 분류된 사업에 한하여 제안자로부터 사업목적, 사업내용, 사업효과 등에 대한 설명 청취
 - 제안자 본인 출석이 어려울 경우 참고자료나 UCC를 제출
- 민관예산협의회 위원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 현장 확인 실시
 - 위원별 현장확인 보고서 작성(사진 포함)후 보고
 - 민관예산협의회 제안사업 1차 선정 시, 첨부 심사

■ 제안사업 1차 선정 : 분야별 사업예산 한도액의 200% 사업 선정

- 사업제안서, 시민의견, 사업부서 실무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사업 필요성, 공공성, 효과성 등을 위원별 평가 후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(붙임 3)
- 총 한도액은 사업예산 350억원 기준 200%인 700억원으로, 분야별 적격 사업수 및 사업비 비율로 배분
- 분야별 적격사업이 200% 미만일 경우 평가 생략

■ 사업내용 숙의 및 심사

- 민관예산협의회, 사업부서 등이 참여하여 숙의 실시
- 제안자를 참여시켜 제안 취지를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, “제안자 설명”, “현장 확인 보고서” 자료를 토대로 토론
- 토론을 통한 사업 보완·발전(구체화, 유사사업 통폐합 등) 후 위원별로 사업 필요성, 공공성, 효과성 등에 관한 평가표에 따라 2차 평가 실시(붙임 3)
 - ※ 전체 위원의 합의에 의거 평가 제외 사업 선정 가능

■ 사업 우선순위 결정(분야별 사업예산 한도액의 130%) 후 총회 상정

- 분야별 위원의 평가결과를 합산, 고득점 순으로 우선사업 결정 후 총회 상정
 - 총 한도액은 사업예산 350억원 기준 130%인 456억원
 - 시 사업 중에서 통폐합 구체화 후에도, 수혜범위가 1개구로 제한적인 사업은 시민 투표 대상사업에서 배제
 - ▶ 서울시 직접 수행사업(예:한강, 서울숲 등)이나 시범사업은 가능
 - ※ 지방자치법 시사무 규정 : 행정처리결과가 2개 이상의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
 - 참여예산제 조례 규정 :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, 사업의 기대 효과가 일반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사업을 우선 추진
- 총회 상정 사업 수를 감안하여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의 의견수렴 후 결정
 - ※ 자치구별 시민참여예산위원이 해당지역 시의원에게 총회 상정사업 설명

④ **총회 상정사업에 대한 이의제기 및 조정** '19. 7. 15. ~ 7. 26. (2주)

▣ **부적정 사업에 대한 이의 제기**(참여예산 홈페이지 활용)

- 이의·조정 제기 사업은 시민참여예산담당관 검토 후 지원협의회에서 최종 결정

⑤ **시민참여예산사업 선정(총회)** '19. 8. 31.(토)

▣ **선정방법 : 전자투표**

- 분야별 “민관예산협의회”가 결정한 총회 상정 사업에 대하여 참여예산위원, 예산학교 회원, 제안자 및 일반시민 전자투표를 실시

(자치구별 현장 전자투표 병행 ※ 용역 시행)

※ 최종사업 선정방식 및 투표에 관한 사항은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의견 수렴 결정

▣ **투표대상 : 참여예산위원, 예산학교 회원, 제안자, 일반시민**

- 참여예산위원은 분과위원회 출석률 50% 이하('19.7.31.기준)일 경우 일반 시민 투표반영 비율과 동일

▣ **투표기간 : 2019. 8. 5.~ 8. 31.**

구 분	총회 (참여예산위원)	예산학교 회원	제안자	시민투표
반영비율	30%	10%	10%	50%
투표방법	총회 현장 PC 투표	모바일 또는 재택, 자치구별 현장 PC		
투 표 권	각 분야별 투표대상 사업수를 감안, 투표 사업수 결정			

※ 반영비율, 투표방법 등은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의견 반영

▣ **총회 개최 : 2019. 8. 31(토), 시민청 등/다목적홀(추후 변경 가능)**

- 시민참여예산사업 최종 선정

※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등 참여프로그램 운영(별도계획 수립)

⑥ **참여예산사업 예산안 반영** '19. 9. 2. ~ 10. 31. (9주)

▣ **편성방법**

- **시정·지역참여형, 시정협치형** : 실·본부·국 예산안에 편성
 - **구단위·동단위 계획형** : 서울혁신기획관 예산안에 편성
- ⇒ 예산서 사업명 표기 : “ ~~~~~(시민참여) ”

※ 사업부서에서 시의회 상임위에 선정된 참여예산사업 사전 설명

⑦ **예산안 시의회 제출** '19. 11. (※시의회 심의 의결 후 최종 편성 사업 확정)

3 컨설팅단 운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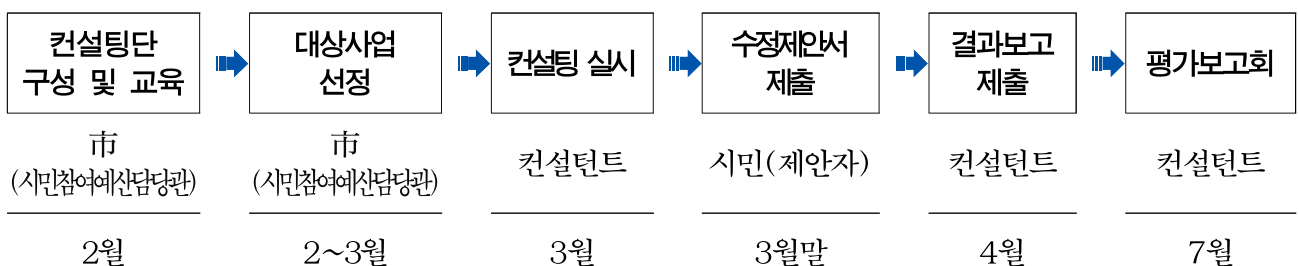
□ 운영 개요

- 대상사업 : 시정참여형 사업
- 구 성 : 각 분야 민간 실무전문가 및 시민참여 활동가(50명)
 - 각 분야 전문단체 및 퇴직공무원, 전임위원, 마을 활동가 등으로 구성
- 역 할
 - 시민참여예산사업 제안자에 대한 상담·지원 : 제안내용 구체화 및 수정·보완
 - 제안자와 소관부서 간 소통 지원 : 제안취지 이해 및 사업 구체화
 - 평가·환류 : 컨설팅 완료 후 평가보고회 개최(제안자, 참여예산위원 등 참석)

□ 운영 절차

- 컨설팅단 구성 및 교육 : 각 분야 추천자 등으로 구성 후 심화교육 실시(市)
- 컨설팅 대상사업 선정 : 컨설턴트별 담당사업 배정 및 사업제안자 통보(市)
 - ※ 컨설팅 희망 제안사업 중 컨설팅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 배정, 안내
- 컨설팅 실시 : 제안자 면담 등 통해 사업내용 구체화 및 수정·보완 지원(컨설턴트)
 - ※ 제안자와 전화, 이메일, 면담 등을 통해 제안취지 확인 및 세부 컨설팅 진행
- 컨설팅 결과보고 : 면담요지 및 제안서 보완내용 등 市 제출(컨설턴트)
- 수정제안서 제출 : 컨설팅 결과 반영하여 수정제안서 市 제출(사업제안자)

□ 컨설팅 추진일정



4 시민참여예산제 운영기구

① 시민참여예산위원회(약칭 '위원회')

- 시민 누구에게나 예산학교를 개방하고, 이수자인 『예산학교 회원』 중 무작위 추첨으로 『시민참여예산위원회』 위원 선정
- 위원회 위원은 300인 이내로 운영

참여예산위원 피추첨 자격 취득 : 「예산학교 회원」 취득

○ 예산학교 신청자격

- 모집일 기준 서울시에 주소를 둔 시민
- 모집일 기준 市 소재 기관 및 사업체 임직원
- 모집일 기준 市 소재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상의 학교 재학생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
- 임기 만료된 참여예산위원도 신청 가능함
※ 시·구 공무원 및 시·구 출연기관이나 투자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

○ 예산학교 수강신청 : 참여예산 홈페이지(<http://yesan.seoul.go.kr>)

- 예산학교 교육일정을 감안하여 사전에 신청 받아 운영

○ 「예산학교 회원」 자격 취득

- 참여예산 위원으로 최소한의 활동에 필요한 기본지식에 대하여 6시간 과정으로 운영
- 예산학교 이수자는 「예산학교 회원」 자격을 부여받아, 참여예산위원으로 추첨될 수 있고, 시민참여예산사업 선정 **시민투표 시 10% 투표권 행사**
- 조례 개정('17.3.23) 이전 예산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도 예산학교 회원으로 인정

□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선정

- 예산학교 회원(약 2,800여명)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공고(2주간)를 통해 위원회 참여의사 및 기능분과 희망자 사전 파악
- **기능분과(온예산·홍보분과) 선 추천 후 민관예산협의회 위원 추천**
 - 추천인원 : 275명(300명 중 시장·시의원 추천 25명 제외)
 - 연령, 성별, 지역(자치구) 간 균형 고려하여 무작위 추천
 - 연임위원(전년도 신임위원)은 전년도 출석률 50% 이상 위원에 한해 선정 가능
 - ※ 전년도 신임위원의 자동 연임제(출석률 기준) 폐지, 전원 무작위 추천 선정
- 선정된 위원은 市 참여예산제 조례에 따라 시장이 참여예산위원으로 위촉

□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 등

㉠ 위원회 구성 ('19. 2월)

- 위원회 위원수 : 300명 이내
 - 위원장(1명)은 분과장(민관협 회장(10) 및 기능분과장(6)) 호선으로 선출
 - 위원장은 총회 회의시마다 선출
- 위원 임기 : 1년(1회 연임 가능)
 - 기간 : 위촉일 ~ 2020.2.28.
 - ※ 해촉, 연임배제 사유 발생시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에서 논의 후 결정

㉡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기능

- 시민 제안 사업 심의·조정, 의결 기능
- 예산편성, 결산 등에 대한 의견 제출
-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현장방문, 공청회, 토론회 등의 개최 등

㉔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

○ 총회소집 및 의결 등

- 개최시기 :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, 시장의 요구에 의해 회의 개최
- 의 결 : 위원 과반수 참석 개최, 출석위원 과반수 동의로 의결
- 회의공개 : 회의록 또는 동영상 공개

○ 회의운영 원칙

- 정치적·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, 시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
- 시의회의 예산심의권 침해 금지 및 시장의 예산편성권 범위 내 활동

㉕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

㉕ 민관예산협의회 : 주요 시정분야에 10개 내외 설치

- 설치분야 : 여성·교육, 경제·일자리, 복지·행정, 교통, 문화관광, 환경, 도시안전, 주택, 공원, 협치
- 분야별 협의회 구성 : 약 27명
 - 협의회 구성원 중 시민참여예산위원의 비율은 3분의 2이상으로 함
 - 참여예산위원 약 20명, 민간전문가 약 3명(살·국장 추천), 사업부서팀장 약 4명 등
 - 협의회장은 참여예산위원 중 호선으로 1명 선임
 - ※ 간사 2명 : 참여예산위원 1명 및 주무과 예산담당 주무관
- 협의회 기능 등 : 시민 제안 사업 심의·조정
 - ※ 협치분야 민관예산협의회는 사업의 특수성을 살릴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구성·운영

㉕ 기능분과

- 설치분과 : 온예산분과 5개 내외, 홍보분과 1개
- 분 과 장 : 6명 내외
- 구성인원 : 총 100명 내외(온예산분과 75명 내외, 홍보분과 25명 내외)

【위원회 분과 위원회】

분과명	구 성	기능·운영
<p>민관예산협의회 (10개 분야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총 200명 내외 · 10개 분야별 구성 : 여성·교육, 경제·일자리, 복지·행정, 교통, 문화관광, 환경, 도시안전, 주택, 공원, 협치 · 분야별 27명 내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 능 : 시민제안사업 심의·조정 - 시정참여형 사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민관예산협의회 심사에 회부 · 심사 진행 후 사업우선순위 결정 및 총회 보고 - 지역참여형 사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적격·부적격 심사('19.6~7월) ○ 운 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심사·선정 : '19.5~7월 - 지역참여형 적격심사 : '19.6~7월 - 총회 상정사업 공고 : '19.7월
<p>온예산분과 (5개 분과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총 75명 내외 · 5개 분야별 분과 구성 : 복지·여성, 문화·관광체육, 환경·공원, 도시안전·교통 주택, 경제일자리·행정 · 분과별 15명 내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시 전체 예산 의견개진 및 모니터링 - 온예산 참여 : 참여결산, 실·본부·국 예산 편성안·예산조정안·시의회 제출 전체예산안 의견제시 등 - 사업 모니터링 : 참여예산사업 중 우수 및 문제 사례 중심 심층 모니터링 - 예산낭비 감시 : 예산낭비신고 활성화 및 현장 확인, 시민성과금 심사 등 -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 : 위원 정량평가 실시 ○ 운 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시 전체예산 의견서 작성 및 결산과정 참여 : '19.3~10월 - 사업 모니터링 : '19. 5월, 10월 - 예산낭비 감시 : '19. 3월 ~ '20.2월 -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 : '19. 5월
<p>홍보분과 (1개 분과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총 25명 내외 · 시민참여예산 제도 홍보 전문독립분과로 구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참여예산 홍보 콘텐츠 제작, 자료수집 ○ 각종 행사에 참여예산 사업 홍보

②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(약칭 ‘협의회’)

-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전문성 보완 및 참여예산제도 발전·운영 지원

구 성

- 인원 구성 : 약 30명
 - 예산관련 전문가(5), 시민단체(3), 참여예산위원(16), 협치위원(2), 시의원(1), 공무원(3)
 - 간사는 서울시 참여예산 담당사무관이 되며, 민간인 실행 간사를 둘 수 있음
- 임원 : 회장 1, 부회장 1(임기 1년, 1회에 한해 연임)
- 임기 : 2년(1회에 한해 연임)
 - 참여예산위원은 조례상 위원 임기규정에 따름(임기 1년)

기 능

-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 등, 시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에 따른 지원
- 시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에 관한 의견제시 및 자문
- 예산학교 운영 및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에 대한 의견제시
- 참여예산제 홍보, 예산관련 토론회·공청회·워크숍 개최 등에 대한 활동
- 시의회와의 원활한 협조방안 모색

운 영

- 회의개최 : 협의회장, 서울시장 요구로 수시 개최
- 참여예산위원회 전 분과장 참여로 참여예산위원회와 협의회 간 소통 강화 및 참여예산제 운영의 효율성·능률성 향상 도모
 - 참석 실비: 20,000원(참여예산위원의 참석 실비와 동일하게 지급)

2

자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지원

- “區단위계획형” 사업 확대를 통해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제 지원 확대
- 부적격 심사 절차 개선 및 심사강화를 통한 사업 품질 제고

□ 추진개요

- 사업규모 : 260억원 내외(지역참여형 20 내외, 구단위계획형 210 내외, 동단위계획형 30 내외)
- 추진방법 : 지역참여형, 구단위계획형, 동단위계획형으로 구분,
지역참여형/구단위계획형은 자치구 자율로 선택하여 추진

구 분	대상 자치구	추진 방법	市주관부서
지역참여형	4개(예정)	구 참여예산위원회에서 사업 심사·선정	기획조정실 (시민참여예산담당관)
구단위계획형	21개(예정)	구 협치회의에서 사업 심사·선정	서울혁신기획관 (지역공동체담당관)
동단위계획형	25개	동회의 등에서 사업 심사·선정	서울혁신기획관 (지역공동체담당관)

※ 구단위계획형 : 참여예산사업을 區단위 지역사회혁신계획 통합시 5억원 추가 지원

- 추진계획 : **구단위계획형 지원 확대 '19년 11개 → '20년 21개(예정)**
※ 지역참여형 지속여부 등은 2021년 시민참여예산 사업부터 별도 검토 예정
-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 및 적격심사 시행

구 분	참여예산제 평가	우선선정사업 적격심사
추진시기	'19. 5월	'19. 6~7월
평가대상	25개 자치구	지역참여형 추진 자치구
평가자	시 참여예산위원회 온오프선분과, 외부전문가	시 참여예산위원회 민관예산협의회
내용	자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실태 평가	지원요청사업 적격심사
결과활용	'20년 참여예산사업비 차등 지원	부적격사업 제외, 적격사업으로 대체지원

-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결과(상 7개 구/중 11개 구/하 7개 구)에 따라 차등 지원

유 형	지역참여형(4개 구)			구단위계획형(21개 구)			동단위계획형
	상	중	하	상	중	하	
지원규모 (억원)	5.5	5	4.5	10.5	10	9.5	동별 0.3

□ 세부추진계획

가. 지역참여형

① 사업신청 및 심사(자치구) '19. 2월 ~ 6월

■ 신청대상 : 해당 지역 주민

■ 대상사업

- 사업내용이 자치구간 전파하여 시너지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사업
- 사업 실행력과 효과성이 있으며 다수의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
 - 1건당 사업비 2억원 이내, 프로그램(행사성) 5천만원 이내

■ 자치구별 사업심사 및 선정 :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

- 자치구별 주민참여예산 조례 및 운영계획, 시 지역참여형사업 부적격 기준에 따라 사전 심사하여 적격 사업 우선 선정

■ 우선 선정 사업 및 참여예산제 평가 자료 제출 : 자치구 ⇒ 서울시

-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자료 제출 : 25개 자치구('19.4월 말까지)
 - 제출자료 : 평가대상연도 참여예산사업 운영과정 등 관련 자료
- 우선선정사업(市 적격심사대상) 제출 : 지역참여형 추진 자치구('19.6월 제출)
 - 제출자료 : 자치구당 11억원 범위 내에서 우선선정사업(市 적격심사대상) 리스트(붙임 5) 및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숙의·심사를 통해 구체화된 사업계획서

② 구 참여예산제 평가 및 사업 적격심사 (시) '19. 5월 ~ 7월

■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 : '19. 5월

- 평가대상 : 25개 자치구
- 평가위원 : 市 참여예산위원회 온예산분과, 외부전문가
- 평가방법 : 정량평가(55점)와 정성평가(45점) 지표에 따라 서면평가
- 평가항목 :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및 기능, 제도운영, 주민교육, 주민의견서, 사업추진, 우수사례 등 7개 부문 17개 지표
- 평가결과 : 합산점수 상위 순으로 상(7區), 중(11區), 하(7區) 평가등급 산출
- 결과활용 : '20년도 자치구 참여예산 사업비는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(지역참여형 4.5~5.5억원, 구단위계획형 9.5~10.5억원)

※ "2019년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계획" 수립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

■ **참여예산사업 적격심사 : '19. 6~7월**

-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사업은 지원대상 사업에서 제외
- 심사방법 : 2회 실시(1차: 市 사업부서 검토, 2차: 市 민관예산협의회 심사)

◆ **부적격 사업 심사기준**

- 지방자치법, 지방재정법, 그 밖의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는 사업
-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
- 전년도에 시민참여예산으로 지원 받은 동일한 사업
-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서울시, 자치구 및 중앙정부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
- 일반사업과 프로그램성 사업 모두 단년도 사업이 아니거나 국·시비 매칭 사업
- 특정 민간단체만의 지원 전제 또는 특정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제안한 사업
-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
- 사업목적 범위를 벗어난 재산성 물품 구입이 포함된 사업
 - ※ 사업목적 수행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자산에 한하여 인정
- 자치구 공공청사(주민센터, 자치회관, 구민회관 등) 기능보강사업

③ **자치구 지원범위 및 사업 결정 '19. 8. 31.**

■ **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 : 지원범위 확정**

-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범위 확정(4.5억/5.0억/5.5억)
 - ※ 지역참여형 사업을 지역사회혁신계획(시민참여예산 구단위계획형) 통합시 5억원 추가 지원

■ **사업선정 :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(총회) 선정 ⇒ 시 총회 승인('19.8.31)**

- ※ 적격심사를 거친 사업에 한해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

나. 구단위계획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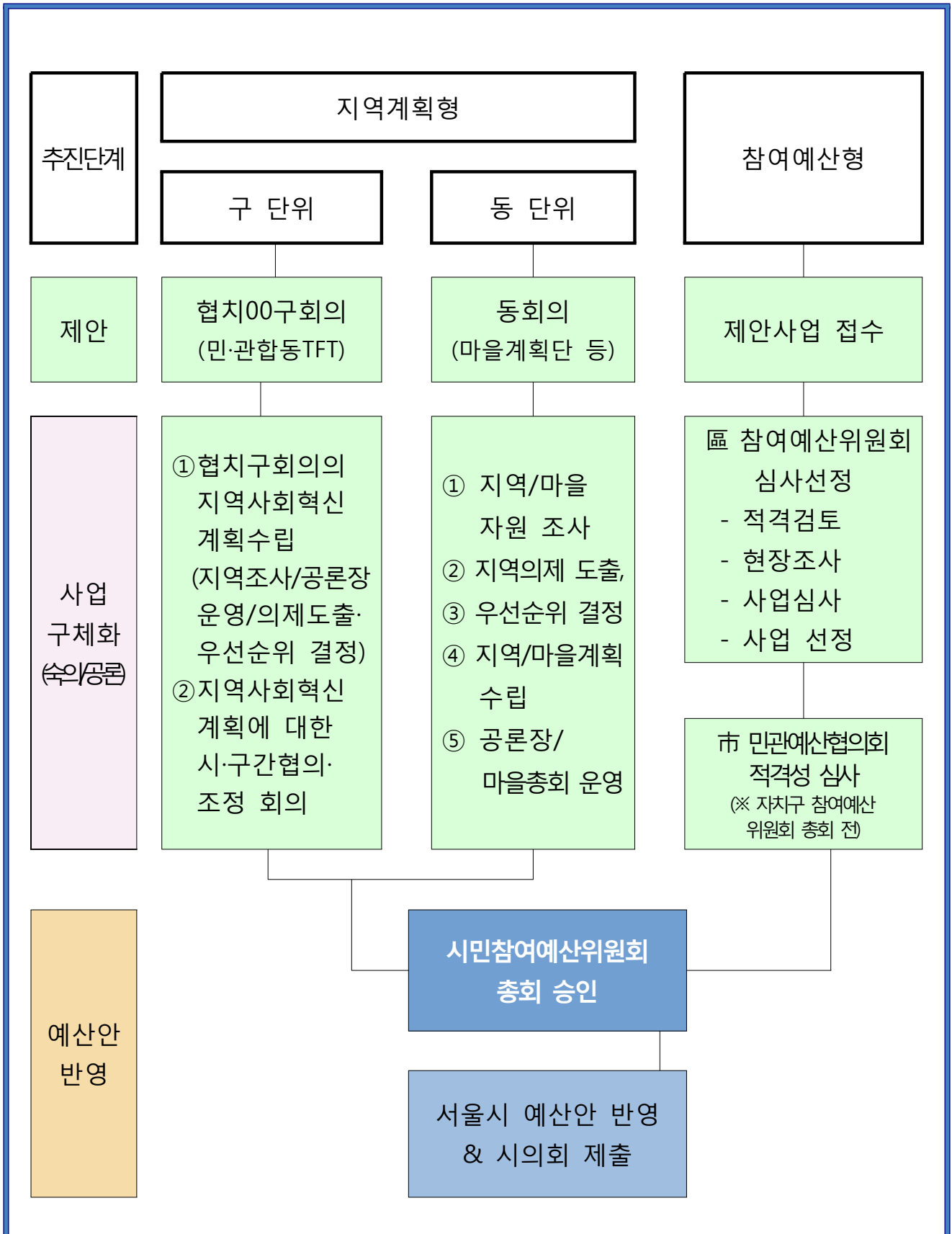
- 대 상 : 구단위계획형 추진 자치구
- 지원신청, 심사기준 및 절차는 市 서울혁신기획관에서 수립 통보

다. 동단위계획형

- 대 상 : 25개 자치구
- 지원신청, 심사기준 및 절차는 市 서울혁신기획관에서 수립 통보

참고자료

시민참여예산제 추진 체계도(지역분야)



3

예산학교 운영

- 예산학교 상설 운영 및 심화교육 강화 등 실질적인 교육을 통해 시민 역량을 강화하고, 자율적으로 시민참여예산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

□ 운영개요

〈 추진방향 〉

- ◆ 예산학교 안정적인 운영체계 구축 및 심화교육 내실화
 - 민간전문기관 대행(용역)운영으로 상설교육 운영 실질화(분기별→월별)
 - 분과별 교육과정 편성 및 리더(분과장, 간사 등) 실무교육 운영
 - 참여예산 담당 공무원 대상으로 업무추진 실무교육 운영(책임자교육)
 - 위원 대상 설문조사 및 평가를 하여 운영 개선 방안 도출
 - 예산학교 자문단(시민교육 전문가) 운영 및 교육 평가 설문 통해 개선방안 도출

○ 추진내용

구분	교육대상	교육운영	교육내용
예산학교 (기본교육)	시 민 누구나	연 15회 내외 (1,500명)	- 참여예산제 및 사례 - 2019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 - 市정책과 예산의 이해
찾아가는 예산학교	특정계층대상 (시민)	연 10회 내외 (600명)	- 대상별(청년, 여성, 장애인, 다문화 등) - 부문별(교육, 복지, 환경 등)
심화교육	위원 및 전문가, 공무원 등	연 10회 내외 (600명)	- 위원: 공통교육과 분과실무교육 - 민관예산협의회 전문가 및 공무원 :참여예산 업무추진 관련 실무교육
청소년예산학교 (시민참여)	청소년	연 10회 내외 (300명)	- 권역별(찾아가는교육 및 청소년 워크숍 실시)
계		3,000명	

※ 예산학교, 찾아가는 예산학교, 청소년예산학교는 민간 전문기관에 대행운영

○ 예산학교 이수자의 시정 참여

- 참여예산위원 피추첨 자격 취득, 사업 선정 투표시 10%의 투표권 부여
- 예산학교 회원의 시민참여예산제 관심 제고를 위한 지속적 정보 제공

□ 세부 운영계획

① 예산학교(기본교육)

- 희망시간대 상시 교육 실시
 - 市 참여예산학교 접속망 구축, 전화·방문신청 병행
- 운영횟수 등 : 15회(월별 3회), 교육공간 확보(대관)

구 분	오전반	오후반	야간반	주말반(토)
1일차	10:00~13:00	14:00~17:00	19:00~22:00	10:00~13:00
2일차	10:00~13:00	14:00~17:00	19:00~22:00	10:00~13:00

② 찾아가는 예산학교

- 기존 지역별 교육(자치구)에서 특정 계층별(청년 등), 시민 관심도 높은 분야별(복지·환경 등) 교육 등으로 다양한 특화교육을 기획 및 운영
- 운영횟수 등 : 연간 10회, 교육공간 확보(대관)

③ 심화교육(위원 및 전문가, 공무원 등)

- 참여예산위원의 각 분과별 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높이기 위한 심화교육 실시
 - 교육과정 ▶ 공통교육: 참여예산위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('19. 3월중)
 - ▶ 전문분과교육: 각 분과별 교육과정 편성 및 리더(분과장, 간사 등) 실무교육 운영('19.3~9월)
- 참여예산 업무담당 공무원에 대한 업무추진 실무교육 진행(책임자교육)
 - 교육시기 : '19. 4월
 - 교육내용 ▶ 서울시 참여예산 프로세스 이해
 - ▶ 리더쉽, 갈등조정, 소통 등 조직 운영·관리에 필요한 기본 소양

④ 청소년 예산학교 교육(시민참여)

- 청소년들의 시민참여예산 참여 확대를 위한 찾아가는 예산학교 및 청소년 워크숍 운영
 - 교육과정 ▶ 정기교육 : 분기별로 청소년 기본교육 실시('19.4월~10월)
 - ▶ 수시교육 : 청소년 역량 강화교육 및 워크숍('19.7월~10월)

※ 2019 예산학교 추진일정

구분	추진내용			
	예산학교 (기본교육)	찾아가는교육	청소년예산학교 (시민참여)	심화교육
1월	'12년 ~ '18년 예산학교 회원 공고(공통)			
2월	민간전문기관 공모계획 수립 (계약체결 및 사업비 교부)	찾아가는 예산학교 (상반기) *5회	민간전문기관 공모계획 수립 (계약체결 및 사업비 교부)	심화교육 계획 수립
3월	1기 예산학교 *3회(2일×3시간)			위원 오리엔테이션 (공통심화교육)
4월	2기 예산학교 *3회(2일×3시간)			상반기 심화교육 (분과위원, 민간전문가, 공무원)
5월	자문단 구성·운영	찾아가는 예산학교 (하반기) *5회	청소년 예산학교 운영 (4월~10월) 청소년 역량강화 워크숍 (7월~10월)	위원리더 및 실무진 교육
6월	3기 예산학교 *3회(2일×3시간)			'19년 위원 대상 설문조사(분과별)
7월	4기 예산학교 *3회(2일×3시간)			하반기 심화교육 (분과위원)
8월	자문단 운영 중간점검 실시	찾아가는 예산학교 (하반기) *5회	청소년 예산학교 운영 (4월~10월) 청소년 역량강화 워크숍 (7월~10월)	찾아가는 시민투포 홍보활동
9월	5기 예산학교 *3회(2일×3시간)			분과별 설문 평가
10월	연간 설문 종합 평가			
11월	자문단 평가 보고회			
12월	연간 평가 및 개선방안 수립	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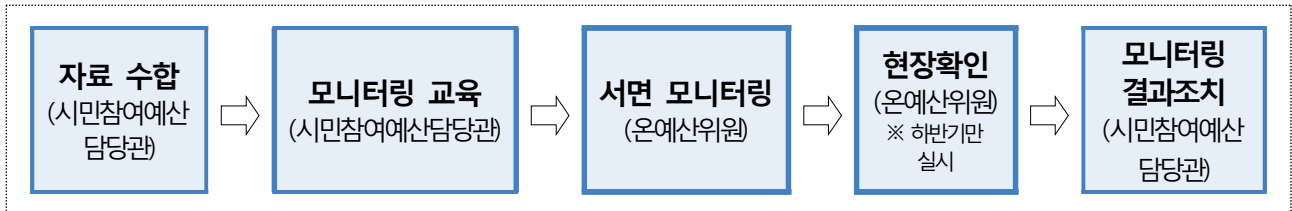
4

시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운영

시민의 눈높이에서 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시민의견 수렴 및 문제점 개선을 통해 참여예산사업 품질 향상 제고

□ 시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운영개요

- 운영기간 : 2019년 5월, 10월(상·하반기 연 2회)
- 대 상 : 2018년 ~ 2019년 50백만원 이상 시정참여형사업
- 평가방법



- 상반기 : 과년도(2018년) 사업에 대해서 결산자료를 활용하여 서면 모니터링 실시
- 하반기 : 2019년 사업에 대해 집행자료(방침서 등) 활용하여 서면 및 현장확인 실시

□ 시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세부 계획

- 평가주체 : 시민참여예산위원회 ‘온예산분과 위원’
- 세부내용
 - 상반기 : 과년도 사업에 대해 사업완료 여부(불용·이월 확인), 사업효과성, 시민 유익성 등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 실시
 - 하반기 : 2019년 사업에 대해 사업 제안취지 이행 및 집행을 현황, 사업 진행시 예산낭비요소 및 민원 발생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 실시
- 효율적인 평가를 위한 심화교육(워크숍) 및 사업 현장확인 실시
 - 심화교육 : 사업 모니터링 방법 안내 및 사업 평가 실습
 - 현장확인 : 소분과별로 현장확인 필요사업 선정 및 실시
- 평가에 대한 환류 : 시민의견 및 평가결과는 사업부서에 송부하여 문제점 개선 및 사업 적기 추진 권고

5

참여예산제에 대한 시민참여 유도

- 시민제안 상시 접수 시스템 운영 등 참여방법 및 절차 다양화하여 일상적 시민참여 활성화
- 참여예산제에 대한 홍보 강화로 시민관심 제고 및 참여 유도

 시민참여예산사업 정기 공모 참여 유도

- 제안사업에 대한 구체화나 통폐합 의견 등에 대한 좋은 의견(홈페이지 댓글)을 선정하여 인센티브(모바일 상품권 등) 제공하여 참여 유도

 시민참여예산사업 상시 접수

- 기 구축되어 있는 상시제안 시스템을 활용 [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 (yesan.seoul.go.kr) : 사업신청 > 시정형 및 지역형(수시)] 하여 시민제안 상시 접수 및 관리

 참여예산제에 대한 홍보강화

- ‘민주주의 서울(democracy.seoul.go.kr)’, ‘내 손안의 서울’ 등 홈페이지에 참여예산 공모를 연계하여 관심 시민 참여 유도
- 블로그 등을 통한 참여예산제 상시 홍보
 - 참여예산 위원 활동내용, 사업현장 탐방, 우수사례 등 상시 홍보
- 시민참여예산 백서 발간·배부하여 시민관심 제고
- 사업선정 시민투표 기간 및 자치구별 현장 홍보(4주)

 한마당 총회 개최

- 일시/장소 : 2019. 8. 31(토)/시민청 등, 다목적홀(※ 추후 변경가능)
- 추진주체 :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, 시민참여예산위원회 “홍보분과”
- 주요내용 : 서울 재정분야 축제를 실시하여 시민의 관심 제고 및 참여 확산
※ 대행사 선정 추진

6 시민참여예산제 추진 시 개인정보 처리

- 시민참여예산 공모, 예산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시민의 개인정보 수집에 따른 처리방침을 정하여 시행하고자 함
 - 기본방향 : 사업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수집(수집·이용 동의 조건) 기간 만료 후 폐기

관련근거

-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
-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
-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(행정안전부 고시)

개인정보 수집·처리 계획

【 예산학교 운영 관련 】
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목적 : 예산학교 회원(참여예산위원 포함) 관리
- 대 상 자 : 예산학교 교육 신청자
- 수집·이용 항목 : 이름, 연락처(휴대폰 번호), 이메일, 생년월일, 성별, 소속 자치구, 회원 및 위원 활동 사진·영상
- 보유·이용 기간
 - 예산학교 교육 수료자인 경우 : 회원 탈퇴 시까지
 - ※ 단,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는 회원 탈퇴 후 3년간 보관
 - 예산학교 교육 수료자가 아닌 경우 : 1년

【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 】
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목적 :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관리
- 대 상 자 : 참여예산 사업 제안자
- 수집항목 : 이름(단체명, 대표자명), 연락처(휴대폰 번호), 이메일, 소속 자치구
- 보유·이용기간 : 기본 2년(단, 예산편성 사업은 5년)

7 시민참여예산제 관련 시민의견 조사

- 시민에게 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한 만족도 및 의견을 수렴하여, 제도 및 운영 개선 향상 도모

조사개요

- 기 간 : 2019. 9. 2. ~ 9. 15.
- 대 상 : 참여예산사업 참여자 및 홈페이지 사용자
- 방 법 : 제안자 휴대폰 문자 발송 및 홈페이지 팝업 안내 등
 - 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'설문조사' 를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
- 조사내용
 - 참여예산사업 접수 및 심사진행에 따른 투명성, 공정성 수준
 - 참여예산사업 실행 관련 만족 수준
 - 참여예산제 관련 의견 제시 등
 - ※ 세부계획 별도 수립 시행

추진일정

- '19. 7월 ~ 8월 : 의견조사 항목 구성 및 프로그램 개발
- '19. 9월 : 의견조사 실시 및 결과 보고
- '19. 10월 ~ 12월 : 참여예산제 개선방향 수립 시 참고 및 반영

V

추진일정 및 행정사항

□ 추진일정

※ 세부일정 변경 가능

구분	일정	비고
참여예산위원 선정	‘19. 2월 ※ 압기: 위촉일 ~ ‘20. 2.28.(위촉식 3월)	- 3월부터 참여예산 위원 활동 시작
운영계획 수립	‘19. 1월	- 운영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하여 충분한 사업심사 및 홍보기간 등 부여
제안사업 공모	‘19.2.11~3.22.	- ‘20년 참여예산사업 공모(시정참여형, 시정협치형, 지역참여형) - 시민들이 사업 제안할 수 있는 기간 부여
제안사업 시·구 사무 구분 및 적격성 검토, 통폐합 및 구체화	‘19.3.25~5.7.	- 1차: 市 실·국 본부에서 법령 위반 사항 등 적격·부적격 검토(구체화 및 통폐합) 및 시·구 사무 구분 - 2차: 민관예산협의회 검토
제안자 설명(적격사업) 및 현장 확인, 제안사업 1차 선정(200%)	‘19.5.8.~6.5. ※ 분야별 실정에 따라 일정수립 적의 추진	- 제안자 제안취지, 사업 목적 및 내용 설명 - 심사에 필요한 사업 모두 현장 확인 - 심도 있는 사업 심사
제안사업 통폐합·구체화(숙의)	‘19.6.7.~7.5.	- 제안자, 참여예산위원이 유사사업을 통폐합하고, 사업을 확대·발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업 심사 기간 부여
총회상정사업 결정(130%)	‘19.7.8.~7.12.	- 총회 상정사업 수 감축
총회상정사업 공고(※이의 제기 및 조정)	‘19.7.15.~7.26.	- 사업 심사 숙의 시 간과한 부적격 사업 여부 등에 대한 사전 이의기간 부여 ※ 7.29~8.1 이의건 지원협의회 심의 결정
시민참여예산사업 선정 시민투표 홍보 및 시행	‘19.8.5.~8.31.	- 전자투표(엠보팅)
한마당 총회	‘19.8.31.	- ‘20년 참여예산사업 선정
시민의견 조사	‘19.9.2.~9.15.	- 시민 의견 수렴
참여예산제 평가 및 개선 방안 마련	‘19. 10~12월	- ‘19년 참여예산제 운영 성과 및 개선 방안 마련 ※ 토론회 개최(11월) 등
시 전체예산 의견 수렴	▶ 심화 교육: 3월 ▶ ‘19년 예산 분석 및 ‘20년 예산 편성 방향 의견 제시: 3~6월 ▶ 실국본부 예산안 의견제시: 7월 ▶ ‘20년 예산안 시민 의견제시: 8~10월	※ 시의회 시민의견서 제출(예산담당관): 11월
모니터링	‘19. 5월, 10월	
예산학교 운영	연중(‘19.3월~)	
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	‘19. 5월	
자치구 사업 적격성 검토	‘19. 6~7월 ※ 자치구 총회 전 실시	- 자치구 사업 최종 선정 전 실시로 효율성 확보

행정사항

- '20년 시민참여예산사업 공모 관련 보도자료 배포 및 '19년 시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홈페이지 공개(2월중)
- 시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 대한 자치구 설명회 개최(2월)
 -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팀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
- 민관예산협의회 구성·운영 관련 주무팀장 회의 개최(3월)
 - 시정사업 추진관련 10개 분야 주무팀장 및 주무부서 예산담당을 대상으로 실시
 - 분야별 민관예산협의회 구성(민간전문가 및 공무원 위원 추천) 및 운영 실무회의
- 참여예산위원 오리엔테이션 실시(3월중)
 - 전 참여예산위원 대상 '19년 운영계획 세부이해 등
 - 공통교육, 전문분과 교육 실시
- 시민참여예산위원회와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위원 등 활동비 지급
 - 「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 조례」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준하는 실비
 - 어린이·청소년(고등학생 이하)에 한해 희망 시 자원봉사시간 인정 가능, 이 경우 자원봉사에 따른 교통비, 식비 지급
 - 민관예산협의회에서 1차 선정(200%)된 사업 제안자가 사업 심사 참여 시 자원봉사시간 인정 및 그에 따른 교통비, 식비 지급
- 시민참여예산위원회와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위원 등 활동비 지급

소요예산 : 595.6백만원

구 분		예산액(백만원)	내 용	비고
계		595.6		
시민참여예산제 운영	사무관리비	286.5	○ 시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지원협의회 운영(97.9), 예산학교 운영(100), 참여예산제도 매뉴얼북 제작·배포(22), 시민참여예산 홍보 등(25), 백서 발간(20), 기타경비(21.6)	
	공공운영비	134.3	○ 참여예산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	
	행사운영비	112.3	○ 시민참여예산 한마당총회 운영	
	시책추진 업무추진비	10	○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	
	특정업무경비	22.5	○ 특정업무경비	
청소년예산학교 운영(시민참여)	사무관리비	30	○ 강사료, 대관료, 홍보비 등	

- 붙 임 : 1. 사업분야 및 제안기준과 담당부서
2. 시정·지역참여형 사업 신청서
3. 민관예산협의회 사업 심사 평가표
4. 민관예산협의회별 공무원 간사부서 현황
5. 자치구 참여예산 지원신청 사업 목록(00구)
6.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지표(안). 끝.

사업분야 및 제안기준과 담당부서

사업 분야	채널	제안주체	사업 채택 기준	속의 공론	
				지원내용	지원담당
시정 분야	시정 참여형	▶ 개인 ▶ 단체	민관예산협의회	▶ 컨설팅 지원	▶ 시민참여 예산담당관
	시정 협치형				▶ 민관협력 담당관
지역 분야	지역 참여형	▶ 개인 ▶ 단체	서울시가 제시한 절차 및 협치 체계 요건 심의	▶ 예산 교육 ▶ 협치 교육	▶ 시민참여 예산담당관
	구·동단위 계획형	▶ 자치구 협치 협의회, 동회의 등			▶ 지역공동체 담당관

시정·지역참여형 사업 신청서

○ 사업제안 신청인			
신 청 인		소 속 자 치 구	선택
연 락 처		이 메 일	
단 체 명	※ 단체인 경우 기재	대 표 자 성 명	※ 단체인 경우 기재
<p>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</p> <p>○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목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참여예산 사업제안 확인을 위해 수집 이용됩니다.(상담 또는 문의에 대한 답변 등) - 참여예산 사업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. <p>○ 수집 항목 : 신청인(단체명, 대표자성명), 연락처(휴대폰번호), 이메일, 소속자치구</p> <p>○ 보유·이용 기간 : 기본 2년(단, 예산편성 사업은 5년)</p> <p>○ 동의 거부 권리 안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이 경우 사업제안 신청이 제한됩니다. <p>※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,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.</p> <p>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?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</p> <p>사업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 체크하세요(시정참여형 사업만 신청가능) <input type="checkbox"/></p> <p>※ 시민참여예산에 대한 경험이 있는 분들(전임위원, 마을활동가 등)이 시민의 입장에서 사업내용 구체화, 수정·보완 등의 컨설팅을 진행해 드립니다(타 사업과의 중복여부 등 제안한 사업내용 이외의 부분은 컨설팅 대상이 아님)</p>			
○ 제안사업 내용			
시 정 분 야	선택 (여성·교육, 경제·일자리, 복지·행정, 교통, 문화관광, 환경, 도시안전, 주택, 공원)		
사 업 명			
사 업 위 치	선택 (서울시 전체, 자치구(선택)) 상세위치 (서울시 구 로)		
소 요 사 업 비	사업비 : 천원		
사 업 기 간	2020. . . . ~ 2020. . . .		
사 업 목 적 (제안취지)			
사 업 내 용			
사 업 효 과			
기 타			

민관예산협의회 사업 심사 평가표(200%)

○ 협의회명 :

○ 사업명 :

○ 사업 일반적인 평가표

총점

항 목	평가 지표	배점					점수	
		1	2	3	4	5		
필요성	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제도 취지와 효과 등을 감안할 때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?	그렇지 않다					그렇다	
시급성	이 사업은 내년에 바로 해야 하는 시급한 사업입니까?	그렇지 않다					그렇다	
공공성	이 사업은 공익목적 달성이나 사회적 약자에 도움을 주는 사업인가요?	그렇지 않다					그렇다	
효과성	이 사업은 사업계획이 타당한 근거가 있는 사업입니까?	그렇지 않다					그렇다	
목 표 달성도	이 사업은 사업기간 동안 목표달성이 가능한 사업입니까?	그렇지 않다					그렇다	
수 혜 대 상	이 사업은 다수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라고 생각되십니까?	그렇지 않다					그렇다	
성평등	이 사업은 남녀 성평등 제고에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까?	그렇지 않다					그렇다	
사업비 적정성	이 사업의 경우 사업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비가 적당한 규모입니까?	그렇지 않다					그렇다	

2019. . . .

위원 성명

서명

민관예산협의회 사업 심사 평가표(130%)

- 협의회명 :
- 사업명 :
- 사전평가지표 : 수혜대상
 - 행정처리결과가 2개 이상의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업입니까? (Y / N)
- 사업 일반적인 평가표 총점 점

항 목	평가 지표	배점					점수	
		1	2	3	4	5		
필요성	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제도 취지와 효과 등을 감안할 때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?	그렇지 않 다					그렇다	
시급성	이 사업은 내년에 바로 해야 하는 시급한 사업입니까?	그렇지 않 다					그렇다	
공공성	이 사업은 공익목적 달성이나 사회적 약자에 도움을 주는 사업인가요?	그렇지 않 다					그렇다	
효과성	이 사업은 사업계획이 타당한 근거가 있는 사업입니까?	그렇지 않 다					그렇다	
목 표 달성도	이 사업은 사업기간 동안 목표달성이 가능한 사업입니까?	그렇지 않 다					그렇다	
성평등	이 사업은 남녀 성평등 제고에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까?	그렇지 않 다					그렇다	
사업비 적정성	이 사업의 경우 사업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비가 적당한 규모입니까?	그렇지 않 다					그렇다	

2019. . .

위원 성명

서명

민관예산협의회별 공무원 간사부서 현황

민관예산협의회	간사 부서	소관 실·본부·국
여성·교육	여성정책담당관	여성가족정책실, 평생교육국
경제·일자리	경제정책과	경제정책실, 노동민생정책관, 서울혁신기획관, 청년청, 스마트도시정책관
복지·행정	복지정책과	기획조정실, 복지정책실, 시민건강국, 행정국, 재무국,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, 감사위원회, 인권담당관
교 통	교통정책과	도시교통실, 교통방송
문화관광	문화정책과	문화본부, 관광체육국, 시민소통기획관
환 경	환경정책과	기후환경본부, 물순환안전국, 상수도사업본부
도시안전	안전총괄과	안전총괄실, 비상기획관, 소방방재본부, 도시기반시설본부
주 택	주택정책과	주택건축본부, 도시재생실, 도시계획국, 지역발전본부, 도시공간개선단, 공공개발기획단
공 원	공원녹지정책과	푸른도시국, 한강사업본부, 서울대공원
협 치	민관협력담당관	협치가 필요한 부서

※ 민관예산협의회 분야에 미편성된 부서는 신청건 접수시 유사 분야에 편성하여 운영되며, 신청건 접수상황에 따라 민관예산협의회 분야가 일부 조정될 수 있음.

자치구 참여예산 지원신청 사업 목록(00구)

연번	분야	사업명	사업비	비 고
				우선순위

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지표(안)

○ 평가 방법 : 7개 부문 17개 평가지표(100점)에 따라 서면평가

지표부문	세부지표	평점기준 및 점수		배점
① 위원회 구성 (15)	【정량】 위원 구성의 공정성·자율성	공모·추천위원 비율	5	5
		당연직 공무원 포함여부 (감점)	(-2)	
	【정량】 위원 구성의 대표성	사회적 균형을 고려한 위원 구성 여부	5	5
	【정량】 참여예산기구 구성의 다양성	동별 지역회의 설치·운영비율	3	5
		분과위원회 등 다양한 기구 설치여부	2	
② 제도운영 (50)	【정성】 참여예산 운영 투명성·정보 접근성	참여예산 운영 투명성	5	10
		참여예산 정보 접근성	5	
	【정성】 주민제안사업 심의절차 충실성	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 충분한 절차와 숙의·공론 등 심의절차 충실성	10	10
		【정량】 주민제안사업 최종선정 방식의 주민 주도성	주민참여예산위원 최종선정 의결권 여부	5
		일반주민의 직접참여 여부	5	
	【정량】 자체 참여예산사업비 편성	자치구 자체 참여예산사업비 편성 규모	10	10
【정성】 참여예산사업에 대한 평가·모니터링 충실성	참여예산사업에 대한 평가·모니터링 실시, 환류 여부 및 다양한 주체 참여도	5	5	
【정성】 주민의견수렴의 투명성·다양성	사업공모, 설명회, 공청회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한 의견수렴 여부와 공개 정도	5	5	
③ 주민교육(5)	【정성】 참여예산교육의 충실성	구 자체 참여예산교육 실시 여부 및 내용의 충실성	5	5
④ 주민의견서(5)	【정성】 주민의견서 충실성	주민의견서 작성 과정 및 내용의 충실성	5	5
⑤ 사업추진(20)	【정량】 무단으로 사업내용 변경 및 예산 이·전용 여부	무단으로 사업내용 변경 및 예산 이·전용 여부	간당 1점 감점	20
		【정량】 집행률 70% 미만 사업	집행률 70% 미만 사업	
	【정량】 정산보고 및 반납 미실시 여부	정산보고 및 반납 미실시 여부	간당 2점 감점	
		【정량】 시민투표 시 직원 강제할당으로 인한 민원	시민투표 시 직원 강제 할당으로 인한 민원	
⑥ 우수사례(5)	【정성】 참여예산 홍보 우수사례	참여예산제도 및 사업 홍보와 관련하여 타 지역보다 우수한 사례	5	5
⑦ 가점	2018 한마당총회 우수실행사업 경진대회 수상 자치구	최우수상	3	가점 3
		우수상	2	
		장려상	1	
소계		100점		

※ “2019년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계획” 수립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